

의안번호	2210224
의 퇴 인	임오경 의원
회 답 일	2025. 6. 11.
추 계 번 호	25F26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25조의8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공연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작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공제대상: 음악·무용·연극·뮤지컬·연예·국악·곡예 등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제공되는 예술적 관람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콘텐츠 － 공제적용 시점: 해당 콘텐츠가 처음으로 공연장에서 실연되어 관객에게 제공되는 과세연도 － 공제율(%): 기본공제 10, 추가공제 20 － 적용기한: 2028.12.31.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5조의8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기업의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안 제25조의8 신설)
- 공제대상: 공연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
 - － ‘공연콘텐츠’란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음악·무용·연극·뮤지컬·연예·국악·곡예 등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제공되는 예술적 관람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콘텐츠

- 공제적용 시점: 해당 콘텐츠가 처음으로 공연장에서 실연되어 관객에게 제공되는 과세연도
- 공제율(%): 기본공제 10, 추가공제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 시)
- 적용기한: 2028.12.31.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공연콘텐츠 제작기업의 기업 규모별로 향후 공제대상이 되는 콘텐츠 제작비 추이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

- 개정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공연콘텐츠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제작비용의 계산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공제대상이 되는 분야와 제작비용 규모 등에 대해 예측할 수 없음
- 또한, 공연콘텐츠 제작비와 관련된 정보가 부재하여 향후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이와 관련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산업조사」에는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종의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등 규모와 관련된 자료는 존재하나, 제작비용 등 개정안의 세수효과 추계에 필요한 자료는 부재
 - ※ 참고로, 최근 5년간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의 규모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의 규모 현황: 2019~2023년

(단위: 개, 명, 억원)

연도	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매출액(억원)
2019	708	4,679	10,371
2020	717	3,268	5,852
2021	735	4,614	8,254
2022	757	4,666	9,894
2023	3,480	12,356	26,142

주: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 통계는 음악공연(뮤지컬, 대중음악, 클래식, 오페라, 전통공연 등)을 기획 및 제작을 주 업종으로 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작성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각 년도

- 또 다른 통계인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공연예술조사」에는 민간단체 및 기획사의 연극, 뮤지컬, 음악 등 순수예술 분야 공연사업비(제작비용)에 대한 통계가 존재하나, 민간 공연단체 중 영리단체에 대한 구분이 없으며, 대중음악 등 분야를 포함하지 않아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움

※ 참고로, 최근 5년간 공연 장르별 규모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3] 민간단체의 공연사업비 현황: 2019~2023년

(단위: 개, 억원)

연도	민간단체 계		민간공연단체		민간기획사	
	단체수	사업비	단체수	사업비	단체수	사업비
2019	3,616	4,711	3,186	1,621	430	3,090
2020	3,882	3,068	3,421	1,279	461	1,789
2021	3,901	3,137	3,416	1,309	485	1,828
2022	3,932	5,652	3,407	1,732	525	3,920
2023	3,971	6,887	3,428	1,927	543	4,959

주: 사업비는 공연단체 평균 사업비 지출금액과 단체수를 곱하여 산출
자료: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조사」, 각 년도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신미정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미정	02-6788-4837	mjshin@assembly.go.kr